| | |
|---|---|
| 의안번호 | 2209712 |
| 의 뢰 인 | 김상훈의원 |
| 회 답 일 | 2025.4.22. |
| 추계번호 | 25D2205 |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Ⅰ.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22조제1항(정년) |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정년을 자녀가 2명인 경우 61세, 자녀가 3명인 경우 62세,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63세로 연장하고, 계급정년을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을 연장 | |

#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22조제1항(정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1~3년)하려는 내용으로, 직원의 재직 중 인건비와 퇴직 후 공무원연금 급여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경우 자녀 수별로 구분된 직원의 연령, 직종 및 직급, 호봉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재직기간, 재직기간별 연금지급률, 전체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등의 정보가 필요함

❑ 2023년 실시된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1]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1) 2023년 8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무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95만 610명이 104만 1,756명의 자녀(평균 자녀 수 1.81명)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년연장 대상인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는 통계에서 제외됨

[표 1] 공무원의 자녀 수: 2023년

(단위: 명)

| 구 분 | 합계 (응답인원) | 평균 자녀수 | 전체 자녀수 | 자녀 수별 공무원수 | | | | | |
|---|---|---|---|---|---|---|---|---|---|
| | | | | 소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국가공무원 | 577,353 | 1.81 | 667,795 | 368,979 | 109,906 | 221,963 | 34,705 | 2,205 | 200 |
| 지방공무원 | 373,257 | 1.81 | 373,961 | 206,697 | 61,878 | 123,982 | 19,420 | 1,260 | 157 |
| 합계 | 950,610 | 1.81 | 1,041,756 | 575,676 | 171,784 | 345,945 | 54,125 | 3,465 | 357 |

주: 본 공무원 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응답률은 85.2%(1,115,517명 중 950,610명)로 공무원 전체의 자녀 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
자료: 인사혁신처, 2023년 제12차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 (2024.4.), 334-337쪽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 행정비용추계과 | 임지원 | 김안나 |

❑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임지원 | 02-6788-4664 | img1@assembly.go.kr |